

청원 소개 의견서			
청원 전명	동대문운동장 상가 2002년까지 사용에 관한 청원		
청원인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 3동 289-3 성수APT 8동 205호	
	성 명	홍연표	주민등록번호
소개의원	최명옥		
소개년 월 일	2001년 6월 11일		
<p>■ 소개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청원 건은 본 소개의원의 지역구와 관련된 청원으로서 그 내용을 검토한바, ○ 청원인들은 오랜 기간 공유재산인 동대문운동장의 여러 점포들을 허가 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는 상인들로서 서울시 방침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이 2001년 12월 31일로 만료되게 되어 있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 그러나 지난 '96년 7월 3일의 서울시 정책회의에서는 상인들에게 계속사용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사용료를 조례의 범위를 넘어 128%를 인상요구 하였고 상인들은 이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흔쾌히 응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 그렇지만 서울시는 '99년 2월 19일 정책회의를 통해서 2001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토록 결정하고 화해조서를 제출케 함으로 상인들에게는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주게되었습니다. ○ 왜냐하면 청원인들은 '96년 7월 3일의 서울시 정책회의에 따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 2002년 월드컵 특수에 대비하여 점포를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사업영역을 국제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IMF라는 시련도 겪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 6~7년 전만해도 이곳은 현재처럼 국제적인 거대한 스포츠타운이 형성되어 있었던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영세상인들이 스포츠용품을 파는 초라하기까지 했던 상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상인들은 나름대로 2002년 월드컵의 특수를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가 하면 국제적인 활동을 통하여 국제상거래의 기틀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8개국과 교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발전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 모든 사업을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하겠다는 서울시 방침에 본 소개의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 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서조항이 있긴 합니다만 이것은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수의계약에 의하여 개인 또는 특정집단의 권리나 이익도 구제하겠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으며 우리 행정도 이제 행정작용의 중심이 침해 행정에 못지 않게 국민에 대한 침익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금번 청원인들의 청원내용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구체적 관련사항과 형편을 고려하여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뿐만 아니라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엄청난 것도 아니고 또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청원인들 나름대로 참고 견디면서 2002년 월드컵을 향해 달려왔던 이들하고 보면 화해조서 이행을 1년간만 보류해 달라는 요구는 있을 수 있는 일이며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결국 청원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들을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결실을 보고자 사용기간을 1년만 연장해 달라는 것이지 일관성 없는 서울시행정을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본 소개의원은 오늘의 거대한 스포츠타운을 형성시킨 그들 나름대로의 공로도 인정하고 얼마 남지 않은 월드컵을 대비해 청원인들이 이루어 놓은 국제상거래의 신용도도 높여주는 의미에서 1년만 사용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 또한 청원인들의 민원을 제기함에 있어서도 생존과 관련된 극한적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행정구제의 수단으로 합리적으로 뜻을 전달하고 이해를 구하는 모습에서 청원인들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시민들에게도 기회를 한번 더 줌으로써 법치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서울 시행정의 참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 감히 본 청원이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현안업무보고

一般現況

- 機構 및 人力
○ 機構 一 2課 2運營官 13팀

